

『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6월 29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6월 30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7월 8일

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석 광

나. 제안이유

-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공기업
특별회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,
- 장기 투자사업 소요재원 확보로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낙동강
수질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도별 15%
총 75% 인상(안 별표 1)
- 2016년 11월 고지분부터 조정(원/㎥당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하수도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하수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2016. 4. 6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침
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「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
- 하수도 업종별 요금을 연도별 단계별로 인상하여 원가대비 낮게 책정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,
- 독립채산제인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,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낙동강 수질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